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73**

제출년월일 : 2019. 02. 12.

제 출 자: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

나. 여성의 보건 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자구수정 (안 제3조제2항, 제6조제4항, 제7조, 제20조제1항, 제38조, 제39조)
- 나. 상위법(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)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8조, 제19조 제2항, 제22조제1항)
- 다. 성인지 예·결산서 작성·제출 관련 근거규정 변경 (안 제19조제1항)
- 마. 여성 보건위생 물품 지원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31조의2)
- 라.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 근거 규정(시행령) 추가 (안 제3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추경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: 부서의견 수렴 완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9. 1. 9. ~ 2019. 1. 29. (20일간) : 의견수렴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 및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"한다)및"을 "한다) 및"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"양성평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"양성평등위원회"로 한다.

제7조 중 "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"을 "양성평등기금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"(성별영향분석평가)"를 "(성별영향평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"를 "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"을 "「성별영향평가법」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"를 "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"를 "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통계법 제18조"를 "「통계법」제18조"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성별영향분석평가"를 "성별영향평가"로 한다.

제3장제3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여성건강증진 사업)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, 방법,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구청장은 법 제38조"를 "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"로 한다.

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"을 "양성평등기금"으로 한다.

제39조 중 "법 제42조 제5항"을 "법 제42조제5항"으로, "양성평등기금"을 "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구청장은「양성평등기본	②
법」(이하"법"이라 <u>한다)및</u> 그	한다) 및
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	
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	
제6조(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	제6조(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
립) ① ~ ③ (생 략)	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	4
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	
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<u>양성평등</u>	양성평등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위원회
에 보고하여야 한다.	
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) 구청	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)
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・시	
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, 제39	
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<u>양성평</u>	양성평
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	<u>등기금</u>
의 관리 • 운용 등에 대한 사항	
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	
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	
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제18조(성별영향분석평가) ① 구	제18조(성별영향평가) ①
청장은 <u>「성별영향분석평가</u>	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5조

법」 제5조에 따라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조례·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, 성차별적요소를 제거·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,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한다.

②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 다.

제19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① 구청장은 <u>지방</u> <u>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</u> <u>제53조의2</u>에 따라 예산이 여성 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,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 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 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<u>「성별영향분석평</u> 가법」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

② 「성별영향평가법」
제19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
결산서 작성) ① <u>「지</u>
방재정법」제36조의2 및 「지
<u>방회계법」제18조</u>
②
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

<u>분석평가</u>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성인지 통계)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<u>통</u> 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 하고,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 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 계를 산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2조(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제1 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 예산・결산, 성인지 통계 등 양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 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u>「통계법」제18조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
을 위한 지원) ①
<u>성별영향평가</u>
 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의2(여성건강증진 사업) ①
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
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
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
수 있으며, 긴급한 경우를 대비
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
<u>있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

제35조(양성평등주간 행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 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 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-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 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 회참여 확대, 가족 · 다문화관련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 여 서초구 소재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 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 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규모. 방법.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제35조(양성평등주간 행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-----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38조(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) 제38조(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) ------ 양성평 등<u>기금</u>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기금의 설치) 구청장은 양 저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법 제42</u> 조 제5항 및 「지방자치법」제1 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.

세39조(기금의 설치)			
		법	제42
조제5항			
양성평등기금(이하	"7	기금	"이라
한다)			

(앞쪽)

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가. 관련조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조 례 안 : 제31조(건강증진 사업)

다. 세출요인 : 여성의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, 가임기 여성들이 긴급시 사용할 수 있

도록 공공시설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를 무료 비치 지원하고자 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공공시설 등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무료 비치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비상용 무료 생리대 지급기 설치비		23,320	-	-	-	47,960
	○생리대 지원	91,980	179,033	179,033	179,033	179,033	808,112
	소계(b)	116,620	202,353	179,033	179,033	179,033	856,072
□총 비용(a-b)		116,620	202,353	179,033	179,033	179,033	856,072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		
시비									
구비	자체	지빙	·세수입	116,620	202,353	179,033	179,033	179,033	856,072
	수입	세오	수입						
	의존	보	조 금						
	재원	지병	 고부세						
지 방 채									
기 금									
특별회계									
기 타									
합계			116,620	202,353	179,033	179,033	179,033	856,072	

- 재원조달 : 구비(여성친화도시) 100%

- 5. 덧붙이는 의견
- 6. 작성자 : 여성보육과 여성행복팀 우경화(02-2155-6691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상용 무료생리대 지급기 설치

[2019년도] 구·동청사, 보건소 및 복지시설 : 24.640천원

- 공공기관 내 화장실(56개소) 설치
 - · 구·동청사 및 보건소(23개소) : 440,000원 × 23개소 = 10,120천원
 - · 복지시설(33개소) : 440,000원 × 33개소 = 14,520천원

[2020년도] 초·중·고교 등 교육기관 : 23,320천원

- 교육기관 내 화장실(53개소) 설치
 - · 초등학교(24개소) : 440,000원 × 24개소 = 10,560천원
 - · 중 학 교(16개소) : 440,000원 × 16개소 = 7.040천원
 - · 고등학교(13개소) : 440,000원 × 13개소 = 5,720천원
- 2. 비상용 생리대 지원 : 179.033천원
 - 2019년도(56개소)
 - · 4,500원(일일 30개) × 365일 × 56개소 = 91,980천원
 - 2020년도(56 + 53개소)
 - · 4,500원(일일 30개) × 365일 × 109개소 = 179,033천원

※ 매년 생리대 지원비 확보 : 179,033천원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